



의안번호

제163호

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건설도시국장
제출연월일	2022. 10. 6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6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10. 6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건축물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8824호, 2022.2.3.개정, 2022.8.4.시행)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정(안 제7조의 2)
- 해체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참고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타사항

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9. 7. ~ 2022. 9. 28.

나) 결과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건축도시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건축물 해체허가 대상)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”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소	관	부	서	성	명
입 안 자	신	속	허가과장	김	용정
	건	축	안전팀장	박	현주
	담	당	자	최	유정 (746-558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건축물 해체허가 대상)법</u> <u>제30조제2항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</u> <u>하는 폭 이상의 도로”란 폭 20미터</u> <u>이상의 도로를 말한다.</u>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해당 없음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해당 없음

나. 추계결과

○ 해당 없음

3. 작성자

신속허가과장 김 용 정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건축물관리법」

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2. 2. 3>

1.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,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,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
2.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,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